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(제4차 본회의)

2011. 9. 7. (수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등 2건 =

총무위원회

【목 차】 -	
1.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	 1
2.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	 4

<의안번호 제2011 - 53호>

지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1년 8월 24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1년 8월 2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9월 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우리군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2)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~안 제13조)
 -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시기 및 내용 등(안 제4조)
 -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시 주민의견 반영 규정(안 제5조)

- 공공디자인의 종합적·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수립·시행 규정(안 제6조)
- O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둠(안 제8조)
- O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규정(안 제9조)
- 공공디자인관련 사무처리 시 사전협의 규정 (안 제10조~안 제12조)
- O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13조)

3)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규정(안 제14조~제20조)

- O 심의·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 위원,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~안 제15조)
- O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·변경,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6조)
- O 회의, 위원의 제척, 수당 등에 관해 규정(안 제17조~제20조)
- 4) 그 밖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시행규칙을 규정함(안 제21조~제22조)
- 5)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공건축물, 도시구조물, 가로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 이드라인이 없어 통일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도시경관이 조화롭지 못함에 따라

-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 하여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7개 도·시·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경남도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시·군이 없음.
- O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1 - 54호>

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레안 ──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1년 8월 24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1년 8월 2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9월 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우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여 자진납세풍토조성 및 자주재원확보에 기여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(안 제1조)
- 2) "성실납세자"와 "유공납세자"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 (안 제2조)

- O 성실납세자: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
- O 유공납세자: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

3)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
- O 성실납세자: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추첨
- O 유공납세자: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

4)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(안 제5조)

O 상품권, 금고기관을 통한 예금·대출금리 우대, 인증서 또는 현판 수여, 세무조사 유예(3년간) 등 지원(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의 개선 지침」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(2011. 5. 11.)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
-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O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